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4.

발 의 자 : 송재호 · 김희재 · 박상혁
이상헌 · 김영배 · 위성곤
이장섭 · 민형배 · 한준호
오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,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·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 및 제20조).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”를 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”를 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시·도지사는 권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시정 조치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</u> 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	제17조의2(시정 조치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공정거래위원회</u>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.	③ <u>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시·도지사는 권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조사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
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
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
게 내보여야 한다.

제20조(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·도지사는 제17조의2제1
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
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
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
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-----

-----.